

□ 저축은행중앙회 공고

「저축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저축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정(안)」 공고

1. 제정사유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8)에 따라 금융상품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공백 발생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내용

- ①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 저축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방문 판매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
- ②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저축은행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
- ③ **(방문판매등 사전안내)**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 등을 개시하기 전에 고객에게 사전안내 가능
- ④ **(방문판매등 절차)**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방문판매 등을 개시할 때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본인 소속을 고객에게 확인 시켜야 함

⑤ **(방문판매 절차 적정성 점검)** 저축은행은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매절차가 적정
한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 필요

⑥ **(방문판매시 금지행위)** 방문판매인력의 방문판매시 금지행위* 규정

* 취급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일체 행위 등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이메일(comp3@fsb.or.kr)